



[축산법령]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지정



1. 가축개량총괄기관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2. 가축개량기관

축종	가축개량기관
한우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도축산관련연구기관, 농협중앙회,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중축개량협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젖소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도축산관련연구기관, 농협중앙회,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중축개량협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돼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도축산관련연구기관, 농협중앙회, 축산물등급판정소, 대한양돈협회, 한국중축개량협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닭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도축산관련연구기관, 축산물등급판정소, 대한양계협회
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마사회
오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도축산관련연구기관, 한국오리협회

부 칙

-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6월 3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